



서울 안내 조항
2018년 4월
(구 한국 내 프랑스어 사용자 협회)

I- 목적

제 1 조

협회는 서울 안내라고 한다. 이 이름은 서울과 한국에서의 프랑스어 사용자들로 구성된 협회의 주요 사명을 반영한다.

협회는 영구적이다.

제 2 조

협회의 목적은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을 배제하는 것이다.

- A) 한국의 프랑스어 사용자들의 삶에 관한 정보의 매개자가 되어 이민자들의 정착을 촉진하고,
- b) 불어를 사용하는 서울과 한국 공동체 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 c) 프랑스어 사용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 사이에 연대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 d) 이 단체가 다른 단체나 유사한 단체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을 가진 단체를 제외하고는 문화적으로나 다른 방법으로)와 갖는 우호적인 관계를 조정하고 강화한다.
- e) 그 활동을 통해 프랑코포니의 이미지와 문화를 홍보하고,
- f) 한국 사회 및 자선 활동을 발전시키고 장려한다.

프랑스어는 회원 간의 의사 소통에 선호되는 언어이다.

II- 회원

제 3 조

한국에서 생활하는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협회에 가입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회의 결정에 따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제 4 조

협회는 명예 회원, 기부 회원 및 일반 회원으로 구성된다.

- 명예 회원은 매년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무국이 승인 한 경우 회비를 지불하지 않는 회원들이다.
- 국장이 지명하는 협회 회장은 프랑스어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통의 기부 금액의 10 배 이상을 기부한다.
- 일반 회원은 일반 회비를 지불하는 회원이다.

기부금은 현재 부양 가족인 남편, 아내 또는 동거중인 배우자 및 자녀에게도 확장된다.

기부 된 각 기부금은 행사 연도 동안 개최되는 총회에 대해 1 표의 투표권을 보유한다. 이 투표권은 회원이 부재중일 경우 배우자까지 확장된다.

제 5 조

협회 회원 자격의 상실 :

- a) 회원의 사임, 사망 또는 법적 불능상태일때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하지만 집행부에 의한 타당한 이유로 예외가 인정된다.
- b) 이해 당사자는 연간 회비 미납으로 인한 상실에 대해 임시 총회에 항소 할 수 있다.
- c) 사망, 사임, 회원자격 취소 등의 모든 사유는 회비의 환급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은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회비를 환불 할 의무가 있다.

III- 기부금

제 6 조

정기 총회는 일반 기부금을 설정한다.

기부금은 다음해 정기 총회의 날부터 기한이 만료된다. 기부금의 유효 기간은 매년 9 월에서 8 월(학년도)까지 이다. 회원이 1 월 현재 등록한 경우 회원비가 감액된다.

모든 기부금은 8 월에 자동으로 만료 되며 위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갱신해야 한다.

IV - 관리

제 7 조

협회는 5 명 이상 16 명 이하의 회원에 의해 운영된다. 그들은 자원 봉사자이다. 사무국은 이 법령 제 15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청 한 회원 중에서 매년 정기총회에서 선출된다. 그 권한은 다음 국의 선거 때까지 연장된다. 사무국의 총 사직은 새로운 사무국을 임명한 통상 총회 또는 특별 총회 회의 후에만 효과적이다.

제 8 조

사무국장은 회장, 부회장, 재무 및 협회 사무 총장 중에서 선택한다. 따라서 사무국장은 협회의 명에 회장을 임명 할 수 있다.

제 9 조

집행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협회의 다양한 활동을 나눈다. 리셉션, 이벤트, 스폰서십, 웹마스터 ...이 목록은 사무실이 설정한 인적 자원 및 우선 순위에 따라 전개된다. 모든 회원들 사이의 연대는 조직의 기초이자 조화로운 발전의 근본이다.

제 10 조

사무국 직원들 사이에 공식이 발생하는 경우, 나머지 회원은 적어도 5 인 경우 협회 회원의 공동 성립을 대체 할 수 있다.

제 11 조

사무국은 회장이 소집 할 때 또는 사무국장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회합한다.

사무국은 회원국의 절반이 출석한 경우에만 유효하게 심의 할 수 있다. 결정은 헌존하는 사람들의 다수결에 의해 취해진다. 동점일 경우, 회장은 캐스팅 투표를 한다.

협회의 상당한 예산과 관련된 중요 사안에 대해 사무국의 절반 이상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의 협의를 전자 수단으로 회장이 참여시킬 수 있다.

각 세션은 분 단위이다. 회의 기록은 회원들에게 전자적으로 발송되어 보관된다.

회원이 의사록에 대한 수정을 원하면 그는 전자적으로 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 12 조

사무국장은 1인 또는 그 이상이 회원이 특정 문제를 처리하도록 명령 할 수 있다. 이 임무의 목적과 기간은 사무국의 심의에서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대리인은 차기 총회에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협회가 수행한 활동이나 행동을 담당하는 국장은 법 집행관의 명시적인 명령을 요구하지 않고 법으로 위임된다. 그들은 그들의 행동을 정기적으로 국에 보고한다.

사무국은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사무국 외부에서 선출된 위원도 포함될 수 있다. 조사위원들은 이 작업의 진행 상황을 국에 보고하고 필요한 결정을 제안한다.

제 13 조

사무국은 회원국이 제출한 신청서를 결정하고 협회의 예산과 계좌를 승인하며 기금 사용 방식을 결정하고 협회의 활동을 지휘하고 통제한다. 그는 자신의 관리에 관해 총회에 보고한다.

V- 총회

제 14 조

협회의 모든 회원들이 소집 된 정기 총회는, 1년에 한 번, 3월 31일에서 7월 31일 사이에 이뤄진다.

모든 회원은 협회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 협회의 각 회원은 투표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모든 회원의 투표권은 총회 초대장에 첨부되어 각 회원에게 전자 방식으로 발송된다. 유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결의안 투표 이전에 자격증명을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총회는 협회의 회장이나 협회의 회원 중 한 사람에 의해 주재된다.

제 15 조

정기 총회 의제는 국장이 정하며, 총회 직전 3월 31일 전에 협회 회원들의 의제를 제기하는 문제를 의무적으로 포함 한다.

협회 활동 보고서와 재무 제표는 총회에 제출된다.

그것은 마지막 회계 연도의 회계의 승인, 물러나는 사무국의 종료, 의제에 관한 문제를 심의하며, 사무국의 개신을 규정한다.

제 16 조

정기 총회 개최는 최소 2주 전 전자적인 수단으로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이 메시지는 최소 강소, 시간, 날짜 또한 의제와 새로운 사무국의 후보자를 표명한다.

협회 및 재무 재표의 활동 보고서는 메시지에 첨부된다.

제 17 조

사무국의 갱신은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다.

협회의 모든 회원은 사무국장의 후보자가 될 수 있다.

지원서는 총회 개최 1 개월 전에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 날짜에 아무 명단도 제출되지 않았다면, 지명 기간은 총회 2 일전까지 연장되어 개별 신청서에 공개된다. 협회는 지명을 요청하기 위해 협회 회원들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한다.

지난 회계 연도에 회원비를 지불한 기부자와 일반 회원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는 다수가 제 3 자에게 행한다. 정족수는 필요하지 않다. 16 명 이상의 후보자가 3 분의 1 의 표를 얻는다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6 명의 후보자가 선출된 것으로 인정된다.

제 18 조

임시 총회는 사무국의 결정에 의하여 또는 국장에게 회부된 회원국 중 최소한 3 분의 1 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소집 될 수 있다.

임시 총회 초대장은 최소 15 일 전에 전자 방식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이 연회는 의제를 명시한다.

VI- 재무 관리

제 19 조

협회의 자원은 다음과 같다 :

- 회비
- 기부 및 보조금
- 조직 할 수 있는 행사의 제품
- 출판물 판매.

사무국은 기부금이나 교부금을 거부 할 권리가 있다.

협회의 자산은 협회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책임지지 않을 경우 대신해서 계약 한 의무로 협회가 법적 책임을 진다.

제 20 조

회장과 재무부는 협회 기금을 입금하고 인출할 권한이 있다.

제 21 조

재무는 매년 재정 수지를 작성하고 국장의 승인을 얻은 후 회원총회를 정기총회에 소집한다.

개좌는 사무국의 치분에 따라 재무부가 보관한다.

제 22 조

사무국의 각 위원은 그의 활동 과정에서 현재 경비를 부담 할 수 있으며, 지원 서류 제출시 협회가 환불해 준다.

다른 한편으로, 2백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국에 의해 논의되어야 된다. 사무국은 회원의 절반이 출석한 경우에만 유효하게 심의 할 수 있다. 결정은 현존하는 회원들의 다수에 의해 결정된다. 동점 일 경우, 회장은 캐스팅 투표를 한다. 사무국의 반수 이상을 함께 소집 할 수 없는 경우 사무국의 회원들은 회장에 의해 전자식으로 관여한다.

VII- 자선 활동

제 23 조

협회는 활동이나 자선 활동을 지원하고 협회의 회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려움에 처한 한국에 살고있는 프랑스어 사용자들을 도와준다.

사무국은 또한 프랑스 문화와 관련된 활동이나 협회를 재정적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지출은 이 법 제 11 조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된다.

제 24 조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보조금과 기부금은 총회 사무국 연례 보고서의 대상이된다.

VIII- 정관 개정

제 25 조

현 정관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 심의를 통해서만 수정할 수 있다.

그러한 결의안은 출석 또는 표명 된 회원의 과반수 득표로 승인되어야 한다.

정족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